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346
------------	------

2020년 4월 23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2월 19일, 김용석 의원 외 9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20년 3월 12일

다. 상정일자

-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0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용석 의원)

가. 제안이유

- 공사장 주변 보호구역의 경우 특히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으므로, 점용 공사의 점용 도로에 보호구역이 포함된 경우 추가적 보완조치를 교통소통대책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 확보를 위한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조4항)

3. 참고사항

가. 관련 법령 : 「도로법 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3. 17 ~ 3. 24

○ 의견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수정동의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에 제4조는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제출토록되어 있으며,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에 등 교통약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지는 않으나 포괄적으로 반영하여 추진하여 왔던 사항으로 교통약자 배려 강조 차원에서 수용 가능함
- 다만, 동조례 제4조제3항에 교통소통대책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현 총 제1~7호로 규정된 제3항에 제8호를 신설하되 항의 순서를 조정 및 변경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으며 제4조내 별도 제4항 신설은 바람직하지 않음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도로점용공사 구간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가 포함될 경우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통행안전시설 확보 등을 시장이 추가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서울시 교통약자 교통사고 현황¹⁾을 살펴보면 어린이 및 고령자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최근 어린이 보행안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강화되어 어린이를 포함한 교통약자 사고예방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마련이 필요함
-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²⁾에 따르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

1)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통계자료(서울시)

연 도	총 사고건수	교 통 약 자	
		고령자(65세이상)	어린이(12세이하)
2016년	6,734	5,219	1,515
2017년	6,823	5,357	1,466
2018년	7,092	5,761	1,331

※ 최근3년간 총사고건수는 연평균2.6%증가

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 ① 시장등은 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호구역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관리카드에는 해당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기·안전표지 및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을 기록하고, 교체·수리 등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역'이라 한다)에 대한 사후관리를 시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 제4조제3항7호에서는 공사 시행자가 수립해야 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보행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호구역이 도로점용공사 구간에 있는 경우 교통약자 통행안전시설과 통학로 확보 등의 사항을 교통소통대책에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는 등 개정조례안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 ③ (생략) <u><신설></u></p>	<p>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u> 1.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 2.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p>